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요구 · 통보

제 목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소홀

기 관 명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내 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징수 결정 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청문 시작 10일전까지 사전통지를 하여 청문을 할 수 있고, 징수가 결정 되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¹⁾를 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합동 감사기간(2018. 2. 26. ~ 3. 16.) 중 울산광역시의

1) 납부 방식에는 '일시 납부', '상계 처리', '분할 납부' 방식이 있는데,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계처리를 동의하는 경우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하고, 분할 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 '분할 징수' 가능.

2014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사회보장급여 환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1]와 같이 환수 결정한 163건 274,580,927원 중 6건 7,817,500원(2.8%)을 환수 완료하였고, 157건 223,886,453원을 미환수 하였다.

[표1]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현황

<단위 : 건, 원>

지자체	사업유형	환수 결정		환수 완료		미환수		환수율
		환수 결정건	환수 결정액	환수 완료건	환수 완료액	미환수건	미환수액 (일부 환수액)	
계	기초생활보장	163	274,580,927	6	7,817,500	157	223,886,453 (42,876,974)	18.5%
중구	기초생활보장	8	32,240,130	-	-	8	28,117,810 (4,122,320)	12.8%
남구	기초생활보장	89	143,086,307	-	-	89	127,632,408 (15,453,899)	10.8%
동구	기초생활보장	20	25,559,450	2	2,536,810	18	10,938,105 (12,084,535)	57.2%
북구	기초생활보장	13	16,354,110	4	5,280,690	9	9,607,240 (1,466,180)	41.3%
울주군	기초생활보장	33	57,340,930	-	-	33	47,590,890 (9,750,040)	17.0%

부정수급 징수 대상자는 ‘일시 납부’, ‘분할 납부’, ‘상계처리’ 방법으로 징수 결정금액을 보장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보장기관에서는 납부 방식에 따른 적정한 징수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1. ‘분할 납부’, ‘일시 납부’에 대한 징수 처리 부적정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85건(143,636,548원) 중 [표2]와 같이 납부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3건(15,913,668원),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60건(126,733,010원)이었으며, ‘일시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납부율이 0%인 9건(24,100,000원)의 경우에도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2]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분할 납부’ 환수 현황

<단위 : 건, 원>

지자체	분할 납부		환수 완료		환수 미완료			
	환수 결정	환수 결정액	환수 완료	환수 완료액	미완료	환수 결정액 (미환수액)	납부통지 미이행	체납절차 미이행
계	88	160,820,758	3	5,188,460	85	155,632,298 (143,636,548)	23 (15,913,668)	60 (126,733,010)
중구	5	27,206,820	-	-	5	27,206,820 (26,306,820)	1 (466,640)	4 (25,840,180)
남구	64	108,571,448	-	-	64	108,571,448 (101,866,748)	22 (15,447,028)	42 (86,377,620)
동구	-	-	-	-	-	-	-	-
북구	11	13,204,730	3	5,188,460	8	8,016,270 (6,550,090)	-	8 (5,602,320)
울주군	8	11,837,760	-	-	8	11,837,760 (8,912,890)	-	8 (8,912,890)

2. ‘상계 처리’에 대한 징수 처리 부적정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납부가 미완료된 62건(48,240,905원) 중 [표3]과 같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하여 상계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적정한 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26건(17,684,972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계 처리를 중지하고 있는 경우가 24건(16,489,631원)이었다.

[표3]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상계 처리’ 환수 현황

<단위 : 건, 원>

지자체	부정수급 환수 현황				환수 미완료				
	납부 방법	환수 결정	환수 결정액	환수 완료	미환수 (A+B)	수급자격 유지 (A)	상계 미이행	수급자격 중지 (B)	징수 미이행
계		65	81,486,449	3 (2,629,040)	62 (48,240,905)	24 (16,489,631)	24 (16,489,631)	38 (31,751,274)	26 (17,684,972)
중구	상계	3	5,033,310	-	3 (1,810,990)	2 (1,524,250)	2 (1,524,250)	1 (286,740)	1 (286,740)
남구	상계	24	26,341,139	-	24 (17,856,660)	10 (6,954,051)	10 (6,954,051)	14 (10,902,609)	13 (10,259,787)
동구	상계	20	25,559,450	2 (2,536,810)	18 (10,938,105)	8 (4,175,120)	8 (4,175,120)	10 (6,762,985)	10 (6,762,985)
북구	상계	1	92,230	1 (92,230)	-	-	-	-	-
울주군	상계	17	24,460,320	-	17 (17,635,150)	4 (3,836,210)	4 (3,836,210)	13 (13,798,940)	2 (375,460)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통보]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은 1건(446,640원)에 대해 납부 절차를 이행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미환수한 3건(1,810,990원)에 대해 적정한 징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의 조속한 환수를 위하여 대상자에게 납부통지, 독촉 등을 적극 조치하고, 미납사유가 단순 납부기피 대상자로 분류되는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압류·매각·청산) 진행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은

[통보]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은 22건(15,447,028원)에 대해 납부 절차를 이행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미환수한 23건(17,213,838원)에 대해 적정한 징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의 조속한 환수를 위하여 대상자에게 납부통지, 독촉 등을 적극 조치하고, 미납사유가 단순 납부기피 대상자로 분류되는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압류·매각·청산) 진행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은

[통보]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미환수한 18건(10,938,105원)에 대해 적정한 징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의 조속한 환수를 위하여 대상자에게 납부통지, 독촉 등을 적극 조치하고, 미납사유가 단순 납부기피 대상자로 분류되는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압류·매각·청산) 진행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구청장은

[통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의 조속한 환수를 위하여 대상자에게 납부통지, 독촉 등을 적극 조치하고, 미납사유가 단순 납부기피 대상자로 분류되는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압류·매각·청산) 진행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수는

[통보]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미환수한 6건(4,211,670원)에 대해 적절한 징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의 조속한 환수를 위하여 대상자에게 납부통지, 독촉 등을 적극 조치하고, 미납사유가 단순 납부기피 대상자로 분류되는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압류·매각·청산) 진행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